

[붙임]

##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100명 이상으로 한다”를 “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한다”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<u>100명 이상</u> 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<u>100명 이상 200명 미만</u> 으로 한다.

